

수 있음.

- 2) 부보금융기관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3)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 목표기금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94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중 “주식”을 각각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5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권상장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제9조제17항제7호 중 “인가를 받은”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두지 아니할 수 있다”를 “둘 수 없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 경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1조제3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기업회계기준”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업무보고서 및 공시”)를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채권 또는 특별손실”을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그 밖에”를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로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파생””을 ““파생” 또는 “선물””로 한다.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제4장 제1절 제2관의 제목 “투자권유”를 “투자권유 등”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 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제3항 중 “거짓으로”를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권유”를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영업소”를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국내지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로, “사항, 국내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를 “사항 등 국내지점등의”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이하 이 항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국내지점등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무대행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그 국내지점등에 명할 수 있다.

1. 국내지점등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대행자

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금융위원회에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요구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제1호의 요구에 따라 그 국내지점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

3. 제2호의 요청을 받은 국내지점등이 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
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할 것

제71조제4호 중 “주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하
나.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
권”으로, “주권이”를 “증권이”로, “주권에”를 “증권에”로 하고, 같은 호
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76조제4항 중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
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
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주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는
자에게는”을 “전자증권중개회사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
자증권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에게”를 “전자증권중개회사에”로
한다.

제80조제5항 전단 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제3호가목·나목”을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로 한다.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을 “주식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
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시기”를 “교부시기”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제90조제1항 중 “20일”을 “2개월”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6항 중 “회계감사인”을 “회계감사인은 제9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처리방

법”을 “회계감사인의 권한”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122조제4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할 수 있다.

제125조제1항제6호 중 “작성한”을 “작성하거나 교부한”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9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가 업종별·사업부문별로”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채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

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회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편제3장의2(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을 제외한 이 장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취득금액으로 본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제2항 후단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써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해당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만 해당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

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려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을 “소각할 자기주식 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다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제455조제2항에 따른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

여야 한다.

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1(신종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과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 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 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 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 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 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 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 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 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 용한다.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 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

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 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 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70조제2항에

다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기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기주식의 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제16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6.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5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
10.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가격을 산정한 경우
12.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우선배정을 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신종사채를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1.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2.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6조 중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 제166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경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②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68조제1항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선의를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의 손해배상책임”을 “선의를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한다.

제173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3년간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증개·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74조제1항제1호 중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의”를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을 “그 법인”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개매수자의 계열회사 및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공개매수자”로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계열회사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

득·처분을 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4항제2호 중 “증권의”를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제186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 중”을 “제89조제1항 중”으로 한다.

제194조제2항제7호 중 “순자산액”을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을 “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정·설립”을 “설정·추가설정·설립 및 신주발행”으로 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0조제6항 중 “회계감사인”을 “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

기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회계처리방법,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보고서”로 한다.

제24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를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로 한다.

제24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8조의 제목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2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마목·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95조,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제2항·제6항은 집합투

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총액은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전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신탁업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을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신탁업

제251조제6항 중 “제89조제4호”를 “제8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69조제1항 중 “50인”을 “49명”으로 한다.

제271조제1항제4호 중 “50인”을 “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70조제4항·제6항·제8항”을 “제270조제4항·제6항”으로 한다.

-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3조제3항 전단 중 “50인”을 “49명”으로 한다.

제274조제1항 중 “다른 회사”를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77조제1항 중 “제213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제213조부터 제215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63조 및 제413조(제286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한한다)”를 “제63조”로 한다.

제326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1조를 삭제한다.

제370조제1항 중 “투자자 또는”을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으로 한다.

제4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의”를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43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편제4장에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으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

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5조제2항 중 “신속하게 조사하여”를 “신속하게”로, “문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로, “처리”를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한다.

제43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 의한”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9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제439조제2호가목 중 “제158조제2항 및 제164조제2항”을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7”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제444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246조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제445조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 및 제2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

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제446조제3호 중 “증권, 파생”을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7조제1항을”을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5호·제46호 및 제49호 중 “제271조제4항”을 각각 “제271조제5항”으로 한다.

41의2. 제249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9조제1항에 제15호의2 및 제2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5의2.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제449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의2. 제416조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에 제11호의2, 제20호의2, 제4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지정·변경 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0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4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과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의 고지·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국내지점등이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 제167호의2, 제255호의2, 제255호의3 및 제260호의2부터 제26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7의2. 제166조의2를 위반하여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하는 경우

255의2.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255의3.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260의2. 제2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260의3. 제24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260의4. 금융위원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제249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제124호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78호의2부터 제7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의2. 제2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78의3. 제24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금전차입, 채무 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78의4. 금융위원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제249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8조의 제목 중 “임원 자격”을 “임원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45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를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반기·분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설립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신탁계약에 대하여는 제16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3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을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이 만료될 때까지 제1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을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

법률 부칙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종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에 따라 발행한 신종사채(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6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0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65조의15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3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同法 第191條第3項”을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

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에 포함하고,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된 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이 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 적용(법 제16조)

1) 이미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변경인가에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인가 신청 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도 예비인가 제도를 적용하되, 변경인가 시에도 최초인가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적용되도록 함.

3) 변경인가 시에도 예비인가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법 제87조)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공시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보다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음.

-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 제한함.
- 3)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의결권 공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현행 제107조 삭제)

- 1) 신탁업자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여야 하나, 이는 자기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 2) 신탁업자의 공탁의무와 자기자본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여 신탁업자의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법인 등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법 제160조)

-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반기·분기보고서를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기·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게 되면 현행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가 있음.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관련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법 제165조의2부터 법 제165조의18까지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 2월 4일에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이관하여 정함.

바.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법 제165조의5 신설)

-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되고 나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매수가격과 취득가격과의 차액을 얻으려는 단기적 투기거래가 나타나 건전한 합병 등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금융위원

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주식매수 가격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일정한 경우에는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이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하여 이 법에 반영함.

3)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건전한 합병 등이 원활하여지고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됨.

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법 제174조)

1)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도 해당 거래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으로 함.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 공백을 없앨 것으로 기대됨.

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법 제234조)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종합지수 변동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만을 허용하여 증권 외의 자산의 개별가격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생기기 어려움.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기초자산의 개별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함.

3)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법 제249조의2 신설)

1)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외국에서 운용되는 이른바 헤지펀드(hedge fund)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2)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완화함.

3)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도입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면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활용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법 제274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카. 과징금의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 도입(법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신설)

1)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이 어렵고 과오납된 과징금의 환급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의 과오납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환급금·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다.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 완화(법 제437조)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 조사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협정에 가입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정보교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양벌규정 개선(법 제448조 단서 신설)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하.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1)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과도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및 일반투자자 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 상장법인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도 투자권유 규제의 보호를 받도록 함(법 제9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 3)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인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 4)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 5)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함(법 제47조제3항).
- 6)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법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 7)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법 제51조제1항).
- 8)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법 제122조제1항).
- 9)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동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법 제16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